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47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이훈기 · 민병덕 · 이주희
문금주 · 곽상언 · 송재봉
박민규 · 이강일 · 이해민
이인영 · 양부남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TT 및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광고시장 위축과 제작비 증가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방송이 수행하는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의 안정적 수행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에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은 법률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지역방송 지원사업이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방송의 구조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9항 신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방송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지역방송의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1. 지역방송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2. 지역방송의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u>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u>